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 10. 6 선고 2015가단4384 판결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전 문

원고A

피고B

변론 종결 2015. 9. 15.

판결 선고 2015. 10. 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여주시 C 전 3,350㎡ 중 별지 감정도면 표시 5, 33, 34, 8, 5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나) 부분 하우스 9㎡를 철거하고, 같은 도면 표시 36, 25, 26, 27, 28, 35, 36을 순차 연결한 선내(마) 부분 4㎡ 토지상에 재배 중인 인삼을 굴이하고,

나. 여주시 D 임야 203㎡ 중 별지 감정도면 표시 37, 6, 7, 38, 37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 부분 하우스 6㎡를 철거하고, 같은 도면 표시 39, 10, 11, 12, 13, 42, 41, 40, 39를 순차 연결한 선내(다) 부분 목재창고 8㎡'를 철거하고, 같은 도면 표시 16, 17, 18, 19, 20, 44, 43, 23, 45, 16을 순차 연결한 선내(라) 부분 조립식 건물 16㎡를 철거하고,

다. 가, 나항 기재 각 해당 토지 부분 합계 43㎡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여주시 C 전 3,350m², D 임야 203m²는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가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각 토지 일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바, 해당 조립식 건물, 하우스, 목재창고 등의 철거하고, 재배 중인 인삼을 굴이하며, 피고의 점유 부분 토지를 인도할 것을 청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판사조형우

별지